아전관리팀 신절

예운대구의원 김백철

■ 관내 지방하천 현황



하천명시점종점총연장(km)우리구(km)수영강정관임곡리수영1호교19.28.2

■ 관내 지방하천 현황



하천명시점종점총연장(km)우리구(km)석대천철마 안평리수영강 합류점7.754.75



관내 지방하천 현황



하천명시점종점총연장(km)우리구(km)우동천우동1108-9지점우동해안1.991.99

■ 관내 지방하천 현황



■ 現 하천 · 하수 업무 분장 현황

부 서	분장사무	비고				
도시디자인과	· 하수구 준설 및 잔토 제거(기계준설 포함)					
エハロバゼル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측구 및 하수도)에 관한 사무					
	· 하천 및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 하천·하수(구거)시설물·부속물의 설치·구조개선 및 개량·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제외)					
건설과	· 하천·하수(구거) 등 시설물 ·부속물의 안전점검·진단 등					
	조치관련 사무					
	· 배수설비 설치 인·허가(주택법, 도정법 등)					
	·배수설비설치 및 준공협의(주택법, 도정법)					
건축과	· 배수설비 설치 인·허가(건축법) 및 사용개시 (변경) 신고					
신목백	· 배수시설 준공검사					

■ 업무 현황 및 전담팀 필요성

- 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한 싱크홀, 지반침하, 도로침수 및 수질(악취) 악화 등을 대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시설 업무증가 申.
- 他 구·군대비 하수시설 연장이 길고 하수발생 인구수가 월등히 많아 하천, 하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필요.
- 하천공사는 추진대비 최근 하천개발 등 공사 시행 · 추진은 미비한 상태임.
- 해운대의 관광시설과 하천을 연계하여 해운대구만의 관광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하천개발은 반드시 필요.
- 향 후, 하천 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 참여와 하천관련 민원처리에 신속한 업무추진 필요.
- 부산시 16개 구·군 中 14개 하천 및 하수 전담팀운영 (해운대구 신설 필요)

現 부산시 16개 구・군별 하천 및 하수계 현황 (2018.04.30 기준)

연 번	구 분	총인구 (명)	토목직 정원 (명)	정원대비 인구 (명)	하천,하수계 유무	비고
1	중구	43,855	18	2,436	×	토목계, 도시계발계
2	서구	109,739	23	4,771	0	토목계,도시개발계(연안,하수), 도시계획
3	동구	88,181	21	4,199	0	토목계, 도시계획계 (하수업무 포함)
4	영도구	122,513	24	5,104	0	토목계, 도시계획계, 하수계
5	부산진구	368,940	30	12,298	0	토목1,2계, 도시계획계, 하수계
6	동래구	269,777	27	9,991	0	토목계, 도시계획계, 하수계
7	남구	275,847	31	8,898	0	토목1,2팀, 도시계획팀, 하수팀
8	북구	300,728	19	15,827	0	토목팀, 도시계획팀, 하수팀
9	해운대구	411,772	34	12,110	×	토목1,2팀,도시계획팀
10	사하구	331,884	30	11,062	0	토목1,2계,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하수계
11	금정구	244,546	31	7,888	0	토목1,2팀,도시계획팀, 하천관리팀
12	강서구	118,760	29	4,095	0	토목1,2계,도시계획계, 하수계
13	연제구	205,697	21	9,795	0	토목계, 도시계획계, 하수계
14	수영구	178,955	18	9,941	0	토목계, 도시계획계, 하수계
15	사상구	226,845	26	8,724	0	토목1,2계,도시계획계, 하천하수계
16	기장군	162,668	41	3,967	0	토목1,2팀, 하천팀,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하수팀
	态	3,460,707	423		유:14 무:2	

하천관리팀 신설로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 사업을 위해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조직업무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7. 27.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17.

다. 상 정 일 자: 2018. 7. 25.(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O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무우수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현실화를 위한 일수 조정,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우수자 특별휴가 신설(제16조제7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승인 의무화 및 경조사 특별휴가 현실화를 위한 일수 조정(제16조제1항 <별표3>)
- O 여성공무원 생리기 특별휴가의 무급 단서조항 삭제(제16조제2항)
- 일본식 한자어 및 용어 정비(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 중복조항 삭제(제9조)및 조문의 명확화(제15조제4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특별 휴가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승인 의무화 및 경조사 특별휴가 현실화를 위해 일수 조정된 것을 우리구 공무원 복무조례의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9조(출장공무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출장공무원) 제4항 신설에 따라 상위 법령에 당연 적용되어 중복되는 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 -안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항 및 제15조(병가) 제1항 중 일본식 한자 어 '지참'을 '지각'으로 단어 순화 하였으며
- -안 제15조(병가) 제1항 제2호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 정에 따라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개정 됨.
- -안 제16조(특별휴가) 제1항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제1항 별표 3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 시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되 었으며.
- -안 제16조(특별휴가) 제7항은 주요 구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1329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병가일이 연이어"를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항 중 "공무워은 본인"을 "구청장은 공무워"으로.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을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로. "얻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 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의 사망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3"를 각각 "1"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들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삭 제>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생 략)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u>지참</u>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로 계산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각</u>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 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한 <u>지참</u>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 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생 략)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 	1. (현행과 같음) 2. <u>감염병</u>

4 <u>増フ</u>	미칠 우려가 있을 <u>일이 연이어</u> 7일 사의 진단서를 붙	이상인 경	우에는	4 <u>1</u>	 병가	 일수가 (연간 누: 	 계		
	현	퀭				개	정	안		
혼을	하거나 그 <u>밖의 ?</u> 의 기준에 따른 ?	경조사가 있으	<u> 면</u> 별							
한 경 보건·	성공무원은 생리 우 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얻을 수 9 여성보건휴가는	에 매월 하루의 있다. <u>다만,</u>	니 여성 생리로			<u><</u> र्		 		
제16조 <신설	(특별휴가) ① ~ >		7 2 1	구 설 등 역무여 별휴?	청장은 - -을 성공 에 종사형 가를 부으 등 필요	공무원이 <u>적으로</u> 한 경우이 1할 수	⑥ (현호 <u>주요 시</u> <u>추진하거</u> 네는 5일 있으며, 그 }은 구청]책· 나 이내 그 기	현안사 장기간 의 특 준 및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基亚3	3] 경조시	·별 휴기	-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7	분		대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3	入	망		배와 그	·의 부모. 형제자미	.	1
					1				ı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 7. 27.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17.

다. 상 정 일 자: 2018. 7. 25.(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O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일부가 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축소 예정으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주관"2018 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확보하 였음.
- O 계획도로 개설 이전에 주차장 건립을 완료하여 시장이용 고객 및 상 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현황

(단위: m², 천원)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주관부서
좌동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좌동 884-1번지외 3필지	3층 4단, 총109면 (982.2㎡)	1,800,000	2019년	경제진흥과

○ 사업개요

- 토지면적 : 982.2㎡

- 건립규모 : 3층 4단, 총 109개 주차면(연면적 2,946.6㎡)

- 용 도 : 좌동재래시장 이용객 및 주민 이용 주차장

- 건 립 비 : 18억원(국비 10억8천, 시비 5억4천, 구비 1억8천)

O 향후 추진계획

- 2018. 11. : 실시설계 용역

- 2019. 1. : 공사착공

- 2019. 6. : 준공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승인안은

-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의 반 이상이 도로개설로 축소 예정됨에 따라 지주식 철골주차장 건립을 위해 "2018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주차장 축소시 극심한 주차난, 교통정체 등으로 시장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좌동 884-1외 3필지(현좌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982.2㎡내 지상 3층 4단, 109면 연면적 2,946.6㎡의 공작형 철골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공작물설치 등으로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업비가 18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전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서 2018. 1. ~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응모 및 선정되어 사업비18 억 중 국비 10.8억 확보하였으며, 2018.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2019. 1. 착공하여 2019. 6.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부지에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체증이 예상됨으로 계획도로 개설 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 및 주차장 건립을 완료하여 시장이용 고객 및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7 н		상	· 반 プ]		하 반	7]	ŏ	<u>}</u>	계	出
	구 분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고
	계	토지 건물 기타	1	982.2	1,800 ,000				1	982.2	1,800,000	
취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뚜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982.2	1,800				1	982.2	1,800,000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채분	토지 건물 기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일런번호	·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2004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0 2 1 -1	11 -7 - 12	11-1-11	1112
된 면 면 오 · · · · · · · · · · · · · · · · ·	지목 건물	소재지 좌동 884-1 외 3필지	면적 (수량) 982.2 (1)	1,800,000	2019. 6.	건립	

-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 7. 27.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17.

다. 상 정 일 자: 2018. 7. 25.(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재산 취득(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건물·토지)
 -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인근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부지매입, 건물취득 사항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을 위한 이 동 접근성 편의 제공, 통역서비스 등 안내 인프라를 강화
 - 향후 점용료 발생, 감정평가액 상승 등을 고려컨대, 부지매입 불가피

나. 주요내용

○ 취득(처분)재산 현황

1) 건물

(단위: m², 천원)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취득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부서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관광 안내소 취득	청사포로 167 (중동 508-4)	철	부지 315 건물 125.25 (연297.15)	909,155	2018. 3월	관리이관 (도시디자 인과→관 광시설관 리사업소)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2) 토지

(단위: m², 천원)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취득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부서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관광 안내소 부지 매입	중동 508-4	철	부지 315	660,000 (기준 - 2018. 4월)	2018. 7월	국유재산 매입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 부지매입비 변동 가능

○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건물) 청사포로 167 (토지) 중동 508-4번지

2) 규 모

가) 건물: 건축면적 125.25㎡, 연면적 297.15㎡ (지상 3층)

나) 토지: 315㎡ (= 안내소 93㎡ + 관리동을 제외한 교량부 등 222㎡)

3) 사업기간 : 2018. 3. 22. - 계속

4) 총사업비: 1,569,154,490원

가) 건물: 909백만원 (= 공사비 844백만원 + 인테리어 등 65백만원)

나) 토지: 660백만원 (2018. 4월 기준) 🖙 매입시기에 따른 매입비 상승 가능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승인안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인근 중동 508-4번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업비가 15.7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전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서 건물의 경우 2017. 3월 관광안내소 건립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2017. 6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8. 3월 준공, 2018. 5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으며 토지의 경우 2017. 5월 1년내 매입전재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2018. 4 ~ 5월 토지분할, 이동정리, 대면 및 수시협의(철도시설공단) 2018. 5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으며 2018. 7 ~ 8월예산확보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 매입하여 관광안내소 유휴공간을활용하여 관광서비스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O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사포에 부족한 공중화장실 운영, 거동이 불편한 관관객을 위한 이동 접근성 편의 제공, 통역서비스 등 안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 광안내소가 필요하며
- O 현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 향후 점용료 발생, 감정평가액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	상 반	기	્રં) 반	기	ठ्]-	계	벼]
	구 분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 수	면적 (수 량)	급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고 고
	계	토지 건물 기타	2	315 (1)	1,569,155				2	315 (1)	1,569,155	하반기 감정평가액 변동가능
취	1. 메 입	<u>토지</u> 건물 기타	1	315 (1)	660,000 *4월 기준				1	315 (1)	660,000 *4월 기준	"
득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u>건물</u> 기타	1	315 (1)	909,155				1	315 (1)	909,155	사업비 909백만원 집행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1 11 0		•					L /, L L /	
		위 산 표 /	시	3 -1 33	7-11			
일련번호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1	철	중동 508-4	315 (1)	660,000	2018. 7	건물신축에 따른 해당부지 매입	예정가격은 2018. 4월 기준으로 향후 매입시 비용상승 예상	
2	철	청사포 로 167 (중동 508-4)	n	909,155	2018. 3	건물신축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 7. 27.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17.

다. 상 정 **일** 자 : 2018. 7. 25.(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재산 취득(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 ▷ 반여3동은 노인인구가 21%로 현저히 고령화 되어 있는 지역이나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
 - ▷ 저소득 독거노인이 밀집되어 있어 노인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발생을 방지하고 노인여가활동 기회 마련을 위해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이 필요

나. 주요내용

○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면적)	추정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 설 건립	반여동 1592-22번지	지하1층, 지상4층 (868.76㎡)	3,500,000	2019	행복나눔과

○ 사업개요

1) 위 치 : 반여동 1592-22번지

2) 부지면적 : 331㎡

3)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68.76㎡

4) 사업기간(예정): 2018. 6월 ~ 2019. 12월

5) 총사업비 : 35억원(국비 5억, 시비 12.5억, 구비 17.5억)

(공사비 23.6, 부지매입비 8, 실시설계비 1, 물품 등 장비 2.4)

※ 규모 및 용도 등은 설계용역시 주민의견 수렴 후 적의 조정

○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가) 2017. 2. 6. :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구

나) 2017.12.: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사업비 확보

다) 2018. 3. : 시설부지(반여동 1592-22) 매입요청 (반여3동 주민건의)

라) 2018.4. :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활력증진사업 10억원 사업비 확보

마) 2018. 5.: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시설건립 안건 심의 및 원안가결

바) 2018. 7. : 2018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원안 가결

2) 향후 추진 계획(안)

가) 2018. 7. : 건립부지 매입

나) 2018.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다) 2018. 9. : 주민설명회 개최

라) 2019. 1. : 설계용역 완료

마) 2019. 2. : 공사 착공

바) 2019. 12. : 공사 준공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승인안은

-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 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 -반여3동은 수재민 정책이주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21%로 현저히 고령화 되어 있는 반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노인 여가 공간 확충을 건의하고 있어, 노인복합복지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사업비 확보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8억원, 건축비 23.6억원, 설계·감리등 기타 3.4억원 등 총 35억원이 소요되나, 도시활력증진사업비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분 15억원에 대해서는 구비확보가 필요하며
- -노인복합복지시설의 활용 방안과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도 주 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7			ъ		상 반 기			하 반 기		항		계	n) -									
	구 분		분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비고								
				토지	1	331 (1)	423,216				1	331 (1)	423,216									
	계		궤 기 □	1	655.16 (1)	372,751				1	655.16 (1)	372,751	기존 건물									
			건물	1	868.76	2,359,262				1	868.76	2,359,262	신축 건물									
			기타	1	868.76 (1)	344,771				1	868.76	344,771										
취	1. 매		입	토지	1	331 (1)	423,216				1	331 (1)	423,216									
		미		건물	1	655.16 (1)	372,751				1	655.16 (1)	372,751	기존 건물								
득				기타																		
	2.	교환. 취득	으로	토지 건물 기타																		
	3. 기ㅌ]타취득	토지																		
		기타		기	건물	1	868.76	2,359,262				1	868.76	2,359,262	신축 건물							
															기타	1	868.76	344,771				1
처		계		토지 건물 기타																		
	4.	미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처분	<u></u> 으로	토지 건물 기타						_			lul Ó wl. og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7	재 산 표 시]				비고
일련번호	지목	소재지	면적 (수랑)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1	대	반여동 1592-22	331 (1)	423,216	2018. 7.	노인복합복지 시설 건립 토지매입	기존부 지 및 건물 매입 후
2	건물	반여동 1592-22	655.16 (1)	372,751	2018. 7.	노인복합복지 시설 건립 건물매입	
3	건물	반여동 1592-22	868.76 (1)	2,704,033	2019.12.	노인복합복지 시설 신축 건물	" 0
	0]		ठी		여		백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²⁾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³⁾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7. 27.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25.

다. 상 정 일 자: 2018. 7. 25.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가. 제안이유

- O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O「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해운대초등어린이집, 장산초등어린이집

2) 위탁범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3)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4)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5)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O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O 이번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해운대초등어린이집" 과 "장산초등어린이집" 2개소이며, 해운대초등어린이집과 장산초등어린이집은 2009. 9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가 선정된 후 1, 2차 재위탁을 거쳐 2018. 12. 19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개경쟁 모집 선정 대상이며,
- O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수년 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 O 다만, 수탁자 선정시 위탁운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끝.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공립어린이집(해운대초등, 장산초등)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위탁선정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 2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5조
-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 2017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 위탁대상 시설현황

연 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 (현원)	면적 (m²)	위탁기간	위탁체	원장 (생년월일)	비고
1	해운대초등 어린이집	중동2로24번길30 해운대초등학교내	46 (43)	202.5	2015.12.20.~ 2018.12.19	이화진 (개인)	이화진 (70.02.18)	2018.12.19 2차
2	장산초등 어린이집	선수촌로68 장산초등학교 내	43 (43)	165	2015.12.20.~ 2018.12.19	박남순 (개인)	박남진 (63.12.01)	재위탁 만료

3 위탁체 선정방법

- 해운대초등어린이집과 장산초등어린이집은 2009.9월 공개모집하여 현재 1·2차 재위탁을 거쳐 2018.3.31. 2차 재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는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으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까지 재위탁 가능함.
- 따라서 현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공고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 구의회 동의

-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2017.3.10.) 으로 구의회 동의 절차 이행

4 공개모집 세부계획

○ 공개모집 대상 : 해운대초등어린이집, 장산초등어린이집

○ 위탁기간: 2018. 12. 20. ~ 2023. 12. 19.

O 위탁대상자 공개모집

▷ 모집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

▷ 공고기간 : 2018. 8. 1. ~ 2018. 8. 24.

▷ 공고내용 : 위탁운영 개요, 신청자격, 위탁조건, 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등 ☞ 붙임1

※ 1인 이하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위탁신청자가 1인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위탁자 선정

○ 위탁대상시설 현장방문

▷ 대상 : 공모대상 어린이집 위탁신청자

▷ 기간 : 2018. 8. 27.(오전:장산초등, 오후:해운대초등)

▷ 방법 : 위탁신청자, 기존운영자가 함께 현장 순회 및 설명

○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심사

▷ 개최일자 : 2018. 9월중 개최

▷ 심사기관 :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붙임2

총점	어린이집	운영체의 대표 및	운영체의 시설	운영체의	운영체의
	운영계획	원장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100점	40점	35점	10점	10점	5점

▷ 심사방법

- 자기소개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제출서류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자는 해운대구 위탁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로 발표
 - ※ 불참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하고 70점이상으로 함)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

5 행정사항

- O 구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18. 7월중
- 위탁자 모집 공고 : 2018. 8. 24일한
- 위탁자 신청서 접수 : 2018. 8. 20. ~ 2018. 8. 24.
- 위탁대상시설 현장 방문 : 2018. 8. 27.
- 신청자 신원 조회 : 2018. 8. 31한
-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9월초 개최
- 위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8. 9. 19일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7. 27.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7. 17.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7. 25.

다. 상 정 일 자: 2018. 7. 25.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가. 제안이유

- O 저출산시대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롯데낙천대어린이집

2) 위탁범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3)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4)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5)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O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반여1동 롯데낙천대어린이집이며
- 롯데낙천대어린이집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2018. 3. 29. 국,공립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2018. 4월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였으며, 내부 및 전문가 검토와 심사를 거쳐 2018. 6. 8 부산시로 부터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3천만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2018. 6. 12 기능보강 사업비 및 기자재비 8천 7백만원 지원 통보된 상태이며 2018. 9월 중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려 것임
-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따른다"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자"로 규정함에 따라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자를 대상으로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근거하여 심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심사결과 부적격시 공개모집 대상임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있어『영유아보육법』,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 O 다만, 수탁자 선정시 위탁운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에 따른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끝.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에 따른 위 탁 운 영 체 선 정 계 획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임.

1 위탁선정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2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9조의3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5조
- O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 2018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 그간 추진사항

- 2018. 3. 29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추진 계획
- 2018. 3. 30 공동주택 관리소(입주자대표, 어린이집)등에 사업홍보
- 2018. 4. 2 ~ 13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 신청 접수
 ☞ 1개소 신청(반여1동 롯데낙천대 어린이집)
- 2018. 4. 16 전환대상 적합 여부 내부 검토
- 2018. 4. 17 적합 어린이집 추천(구⇒시)
- 2018. 4. 27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문가 현장 심사
- 2018. 6. 8 국공립전환에 따른 부산시 인센티브 확정(30백만원)
- 2018. 6. 12 국공립전환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및 기자재비 지원 통보(87백만원)

3 추진계획

○ 전환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 (현원)	면적 (m²)	위탁체	원장 (생년월일)	비고
롯데낙천대 어린이집	해운대구 반여로 133 (반여1동, 장산1차 롯데낙천대)	26 (24)	117.47	박경희 (개인)	박경희 (67.8.24)	위탁기간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환 확정 후 결정

O 구의회 동의 : 2018. 7월중

▷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2017.3.10.)으로 구의회 동의 절차 이행

○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심사

▷ 개최일자 : 2018. 9월초 개최

▷ 심사기관 :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위탁체(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총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점	30점	30점	25점	10점	5점

▷ 심사방법

- 자기소개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제출서류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자는 해운대구 위탁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로 발표

※ 불참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80점이상으로 함)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 추진
-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
- 국공립 전환에 따른 관리동 무상임대 협약 체결▷ 입주자대표회와의 무상임대 협약 ⇒ 10년(별도 계획)

4 행정사항

- O 구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18. 7월중
-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9월초 개최
- 무상임대 협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2018. 9월한
- 위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8. 9월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 7.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된 예산안

가.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55,158	497,608	57,550	11.57
일반 회계	534,663	481,980	52,683	10.93
특별 회계	20,495	15,628	4,867	31.14
주 차 장	17,074	12,401	4,674	37.69
의료급여기금	1,018	856	162	18.90
지하수관리	1,814	1,770	44	2.46
기반시설	325	323	1	0.51
주거환경개선사업	212	254	△42	△16.5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업	52	24	28	119.26

나.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주요 증감내역
十正	예산원	기정 메인픽	금액	비율(%)	T# 58414
계	555,158	497,608	57,550	11.57	
일반회계	534,664	481,981	52,683	10.93	
지방세	110,988	106,488	4,500	4.23	재산세(45억), 이자수입(△4.7억)
세외수입	30,904	29,714	1,190	4.00	기타수입(11.7억)
지방교부세	7,018	5,000	2,018	40.38	특별교부세(10.5억) 부동산 교부세(9.3억)
조정교부금	30,412	26,892	3,520	13.09	재원조정교부금(35.2억)
보조금	321,075	298,887	22,188	7.42	국비(66억), 시·도비(155.8억)
보전수입등	34,267	15,000	19,267	128.45	순세계잉여금(130억), 전년도이월금(62억)

특별회계 20,495		15,628	4,867	31.14	
세외수입	8,989	8,981	8	0.09	사업수입(8백만원)
보조금	1,665	898	767	85.40	국비(0.7억), 시·도비(6.9억)
보전수입등	9,841	5,749	4,092	71.18	순세계잉여금(40.4억)

(단위 : 백만원)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нин	OI LI OI	기정	증감		TO 57040
	부서별	예산안	예산액	라	비율(%)	주요 증감내역
	총 계	534,663	481,980	52,683	10.93	
의	회사무국	1,442	1,391	52	3.71	•의사운영지원(25백만원), 의정활동지원(22백만원)
기	획조정실	4,303	4,281	22	0.52	•예비비(△48백만원), 관광시설공단 설립검토 용역(20백만원) •데이터 개방 연구용역(20백만원), pool예산(20백만원)
감	사담당관	150	125	24	19.42	•청렴 공직사회분위기 조성 홍보비 등(19백만원)
	소 계	92,984	83,309	9,675	11.61	
	행 정 지원과	76,439	71,800	4,639	6.46	•노후컴퓨터 교체(1.7억), 인력운영비(44.4억)
행 정	재무과	6,783	4,987	1,796	36.02	•좌4동 문화센터건립(14.7억),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 (60백만원), 문화복합센터 시설물관리(40백만원)
관 리	교 육 협력과	7,583	4,375	3,208	73.33	•학교 교육환경 개선(6.7억), 공공 체육시설관리(2.4억)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7.9억), •송정 테니스파크 조성(12억)
국	세무1과	842	837	5	0.59	
	세무2과	565	559	6	1.03	
	민원여권과	772	751	21	2.77	•인력운영비(11백만원)
	소 계	35,515	19,548	15,967	81.68	
일 자	관 광 문화과	5,595	2,971	2,624	88.35	•관광자원 개발과 추진체계 구축(13.8억) •관광 수용태세 강화(4.9억) •문화축제행사 개최 및 지원(1.1억)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5.4억)
리 산	일자리 창출과	17,066	10,482	6,584	62.82	•일자리 찾기 지원(19.3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9.2억) •노인일자리 지원(15.1억),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13.1억) •행복마을 만들기(4.5억), 보전지출(4억)
업 국	경 제 진흥과	2,785	1,144	1,641	143,43	•물기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9.6억), 에너지 효율향상(1.1억) •수산업 발전지원(1억), 어업기반시설 조성(3.1억), 보전지출(1억)
	늘푸른과	10,069	4,951	5,118	103.35	•도시공원관리(1.9억), 공원시설물 확충(33.9억)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7.9억), 산림내 편의시설 관리(1.8억) •산림병해충 방제(1.3억), 산림재해 일자리(2.1억)

	소계	331,0501	327,726	3,325	1.01	
주	복지 정책과	29,904	31,977	△2,073	△6.48	•복지시설 운영(4.9억),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5.1억) •노숙인시설 지원(1.6억),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3.6억) •아동수당(△47.7억),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육성(2.1억) •반환금 기타(8.9억)
생	주민 복지과	64,009	60,219	3,790	6.2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23.3억), 자활지원(2.2억) •보전지출(10억)
활 지 원 국	행복 나눔과	210,071	208,897	1,174	0.56	•장애인 시설 지원(12.4억), 장애인 생활안정(8.3억) •노인기초생활 안정(△72.4억), 재가노인 복지지원(3.5억)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6억), 보육사업 운영(8.7억) •건전한 기정지원(8.7억), 한부모가정 지원(△1.5억), 보전지출(36억)
	환경 위생과	806	646	160	24.77	•대기관리(1.1억), 보전지출(39백만원)
	청소 행정과	26,261	25,987	274	1.05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68백만원) •보전지출(1.9억)
	소계	34,515	15,778	18,737	118.75	
안	도시 디자인과	9,958	8,695	1,263	14.53	•도로조명시설 관리(1.8억), 하수도 수질관리(6.7억) •인력운영비(2억)
전 도	안전 총괄과	10,294	2,251	8,043	357.39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75.9억)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2.7억), 보전지출(93백만원)
시국	건설과	12,788	3,863	8,925	231.00	•도로건설(38억), 하천·공유수면 정비(4억) •하수도 정비(3억), 보전지출(42백만원)
	건축과	758	598	160	26.63	•공동주택 관리(46백만원), 폐·공가 정비(90백만원)
	토지 정보과	717	371	346	93.57	•지적관리(3.2억)
	소계	17,524	15,296	2,228	14.57	
직 속 기	보건 정책과	13,936	12,590	1,346	10.70	•모자보건 관리(1.1억),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2억) •국가암 관리(2억), 감염병 예방(2.7억), 보전지출(4.7억)
관	건강 증진과	3,588	2,706	882	32.58	•치매관리체계 구축(2.9억), 인력운영비(2.9억) •보전지출(1.3억)
	소 계	11,869	9,444	2,425	25.68	
사 업	관광시설 관사업소	6,874	4,722	2,152	45.55	•해수욕장운영(4.2억), 근린공원관리(5.5억) •청사포 관광시설관리(7억), 수변관리(2.6억) •인력운영비(1.4억)
소	해운대 문화회관	1,349	1,339	10	0.78	
	인문학 도서관	3,646	3,383	263	7.79	•지식·정보·인프라 구축(80백만원) •독서문화공간제공(1.1억)
동	소 계	5,311	5,083	228	4.48	•좌3동 차량구입(22백만원), 좌4동 문화센터 비품(74백만원)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예산안	기정	증	갘	세입내역		세출내역	
회계글	에산인	예산액	금액	비율(%)	세립대극	/ II 는 의 그		
Л	20,495	15,628	4,867	31.14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7,074	12,401	4,673	37.69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724 3,942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주차장건설 및 관리 - 공영주차장 건설 - 소규모주차장조성 •예비비	390 2,196 1,000 1,200 1,798
발전소 주변지역지 원사업 특별회계 (경제진흥과)	52	24	28	119.26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 16	•전통시장시설개선	28
의료급여 기금 (주민복지과)	1,018	856	162	18.90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43 97 22	•반환금	119
지하수관리 (건설과)	1,814	1,770	44	2.46	•순세계잉여금	44	•적립금	44
기반시설 (건설과)	325	323	2	0.50	•순세계잉여금	2	•적립금	2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과)	212	254	△42	△16.55	•순세계잉여금 421	Δ	•적립금	△421

(단위 : 백만원)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17.해운대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7. 30.

다. 상정일자 : 2018. 7. 30.(제2차 회의) 라. 의결일자 : 2018. 7. 30.(제2차 회의)

3. 검토의견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기정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임.

-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일자리 추경 및 부산시 추경에 대응하여 지방이전재원 등을 최대한 지역 일자리사업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 분을 반영 한 것 임.
-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정책사업이며, 구민의 생활안전 및 불편해소, 복지 및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여 짐.
-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과 같이 의결함
 세출 : 아래와 같이 의결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증감	조정액	비고
계	534,664	△227	534,437	
일 반 공 공 행 정	24,190	△20	24,17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0,146		10,146	
교육	2,530	△203	2,327	
문 화 및 관 광	19,359		19,359	
환 경 보 호	21,361		21,361	
사 회 복 지	317,973	△4	317,969	
보 건	15,479		15,479	
농 림 해 양 수 산	3,920		3,920	
산 업 ㆍ 중 소 기 업	1,611		1,611	

수 송 및 교 통	18,049	18,04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0,922	10,922
वा मा मा	3,411	3,411
기 타	85,713	85,713
		534,437

나.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의결함

5. 증감 내역 : 별첨

6. 기타 의견사항

○ 관광문화과의 「온천 수욕장 조성사업」은 예정 대상지(2개소) 중 1 개소에 예산을 집중하여 해운대만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상징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u>삭감</u>요구사항

(단위: 천원)

부서별	폐이지	예산항목	예산액	삭감엑	삭감사유	비고
기획조정실	72	201-01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20,000	20,000	준비 부족	
교육협력과	122	401-01 시설비 ○센텀 씨름연습장 조성	200,000	200,000	부지선정 부적정 및 예산과다책정	
"	122	401-03 시설부대비 ○센텀 씨름연습장 기·준 공식 등	3,000	3,000	"	
복지정책과	349	201-03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실 운영비	1,500	1,500	실효성 부족	
"	349	301-09 일반보상금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 상담 참여실비 보상	2,500	2,500	"	
		계	227,000	227,00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 7.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17.해운대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7. 30.

다. 상정일자 : 2018. 7. 30.(제2차 회의)

라. 의결일자 : 2018. 7. 30.(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7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통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 모키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O 대상 기금 : 2개 기금(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O 기금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관리부서 기금명		변경액	기정액	증감
Л		2,233,274	1,986,548	246,726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1,608,730	1,383,526	225,204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624,544	603,022	21,522

O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가. 자활기금

1) 수입 및 지출 변경내용

	항목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증감내역
			변경액	기정액	변경액	기정액	등삼내꼭
	À		1,608,730	1,383,526	1,608,730	1,383,526	225,204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7,920	7,920			_	
예	치 금 효	회 수	1,469,129	1,243,925			•예치금 회수 225,204
01	자 수	입	22,681	22,681			_
기	타 수	입	109,000	109,000			_
사	융 자 업	성 비			30,000	20,000	•탈수급자 지원 5,000 •자활참여자 교육 등 5,000
융 사	자 업	성 비			240,000	0	•자활기업 등 대여 240,000
예	치	己			1,338,730	1,363,526	•예치금 감소 △24,796

(단위 : 천원)

2)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자활기업 등의 사업장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의지고취를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 임.
- 금번 기금운용 변경안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2억 2천 5백만 원 증가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자활기업 창업으로 인한 점포임 대비용 융자 수요 발생에 따라 자활기업 등 대여 사업으로 2억 4천만원, 탈 수급자 지원사업 및 자활참여자 교육사업 등으로 10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후에는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옥외광고정비기금

1) 수입 및 지출 변경내용

	항목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증감내역	
			변경액	기정액	변경액	기정액	58417	
	계		624,544	603,022	624,544	603,022	21,522	
전	입	급	350,000	350,000			_	
예	치 금 호	! 수	268,544	247,022			•예치금 회수 21,522	
01	자 수	입	6,000	6,000			-	
사	융 자 업	성 비			294,451	294,451	_	
	력 운 영	를 비			114,236	73,939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6,647 •추가 보험료 등 3,650	
예	치	금			215,857	234,632	•예치금 감소 △ 18,775	

(단위 : 천원)

2) 검토의견

- 본 기금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 임.
- 금번 기금운용 변경안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2천 1백만원 증가하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천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은 1천 8백만원 감소하였음.
- 소관부서에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과 홍 보를 위해 대량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 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기타 의견사항 : 해당사항없음